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98 발의연월일: 2021. 1. 11.

발 의 자: 박대수 · 지성호 · 황보승희

김용판 · 정찬민 · 정경희

김희곤 · 서범수 · 한기호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80%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장 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시정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명할수 있다.

제29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시정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 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 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 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u><신 설></u>	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는 제29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 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최초 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